

中國의 仲裁制度에 관한 管見*

- 中國 物權法의 制定을 中心으로 -

A Study on the Jus Rerem Law and Arbitration Law of China

김 용 길**
Yong-Kil Kim

〈목 차〉

- I. 序 論
- II. 中國 物權法의 制定
- III. 中國의 仲裁制度
- IV. 物權法上 紛爭解決에 관한 仲裁制度의 適用可能性
- V. 結 論

주제어 : 仲裁, 仲裁法, 物權法, 私有財産, 制限物權

* 이 논문은 2007학년도 원광대학교 교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圓光大學校 法科大學 教授, 法學博士

I. 序 論

1970년대의 후기, 탈산업화하고 있던 구미 여러 나라에서는, ‘법치의 정통성위기’, ‘사소 유권의 상대화’, ‘계약법의 죽음’, ‘재판외의 분쟁처리’, ‘탈관료제화’라는 논의가 한창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당시의 중국에서는 그것과는 상반되는 조류가 움직이고 있었다. 즉, 중국은 사회주의경제체제의 개혁과 대외개방에 수반하여, 법치원칙의 수립, 사유화의 촉진, 자유로운 계약법원리의 도입, 독립재판의 강조, 기술관료의 태두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근대적 법제의 준비를 급속하게 진행하고 있었다.¹⁾ 이와 같이 중국은 1978년의 등소평의 개혁·개방 이후 시장경제체제의 도입, WTO가입, 헌법 개정²⁾을 통하여 사유재산의 보호에 대한 불가피성을 점진적으로 받아들이다가 드디어 全國人民代表大會(이하 “전국인대”라 한다)가 2007년 3월 16일에 물권법을 통과시킴으로써 정부가 탄생된 이래 60여년 만에 근본적인 변화를 맞게 되었다. 중국은 사유재산의 귀속관계를 규율하는 물권에 관한 기본적인 제도 및 법률들이 미비하였으나³⁾ 시장경제의 발전에 따라 보완되었다. 이번 물권법의 제정으로 중국은 사유재산과 국유재산을 평등하게 보호하고 사유재산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사회주의 시장경제가 정착단계에 들어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중국은 이와 같은 개혁, 개방정책에 따라 급증하는 대외무역분쟁 및 외국기업과의 합자, 합작 투자 관련 분쟁에 대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1994년 8월 31일, 제8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제9차 회의에서 ‘中華人民共和國仲裁法’(이하 ‘중재법’이라 한다)을 제정하여 1995년 9월 1일부터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민상법의 본질은 계약이다. 소유권의 근대화도 상품교환의 계약적 과정의 효율성에 의해서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이다. 중국의 근대적 민상사제도의 준비를 논의할 때에도 계약에 관한 문제를 그 출발점으로 하고 있다. 중국법의 특징을 이해하기 위한 핵심도 계약적 질서에서 찾아보아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동양적 전제주의와 ‘상하질서’로서 알고 있는 전통 중국에서는 서양적 ‘사회계약’의 개념은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중국에도 예컨대 ‘천명(the Mandate of Heaven)’의 관념은 권력을 제한하는 맹자형혁명의 합법근거라는 의미에서 근대적 ‘사회계약’에 유사하다는 견해도 있다⁴⁾.

일반적으로 민사분쟁을 소송이라는 방법으로 해결하는 경우에, 민사소송의 기본적 원칙은 공정, 신속 및 경제성이다. 이 점은 ADR제도에 있어서도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1) 李衡東, “相互性による法とその執行”, 『神戸法學雜誌』, 第46卷 4号, 神戸法學會, 1997, p.629.

2) 중국 정부는 2004년 헌법을 수정하면서 개정헌법 제13조에 사유재산보호 조항을 신설하여 국가가 법률에 따라 국민의 사유재산과 상속권을 보호한다고 규정하였다.

3) 梁慧星, “關於中國民法典編纂”, 『法制研究』, 第2號, 韓國法制研究院, 2002, p.205.

4) See William P. Alford, “The Inscrutable Occidental Implications of Roberto Unger’s Uses and Abuses of the Chinese Past”, *Texas Law Review* Vol.64(1986) pp.931,935-938,954-956; 李衡東, 전제논문 633면에서 재인용.

ADR제도는 사법권으로서의 국가권력에 의한 재판제도와는 달리 소송절차 등에 있어서 완화되어 적용되고 있다. 특히 중국 중재법 제1조는 ‘이 법은 ~ 공정하고 시의적절한 중재를 보장하고~,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건전한 발전을~’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중재제도의 특성에 비추어 보아 물권법상의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중재제도를 적용할 수 있는가, 아니면 성질상 일정한 제약이 있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인가라는 의문이 물권법의 특질과 아울러 중재제도의 성질과 관련하여 제기된다. 본고의 II에서는 중국의 물권법을, 그리고 III에서는 중국의 중재제도를 개관한 후에 IV중재제도의 적용가능성의 문제를 서설적인 검토로서 그치고, 구체적인 쟁점이 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으로 미루고자 한다.

II. 中國 物權法의 制定

1. 制定 經過

중국이 2007.3.16일 오전에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물권법을 제10기 전국인대 5차회의에서 압도적 다수로 채택함으로써 이제 동북아시아의 거대한 경제권을 가진 한국, 중국, 일본 등 경제대국은 명실상부하게 유사한 물권법을 가지게 되었다. 물권법의 기초작업은 1993년에 시작되었는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는 물권법의 제정을 아주 중요하게 여겼다.⁵⁾ 그 후 2005년 6월에 물권법 3차심의에서는 사유제 인정으로 파생될 공유제 보호의 필요성을 논의하기 시작하여 2005. 7. 8일에 물권법초안을⁶⁾ 수정 공포하였다. 그 해 10월에 전국인대 상무위원회는 물권법 제4차 심의를 하면서 공유제를 주체로 하고 다양한 소유제를 인정한다는 원칙을 마련하였다. 2006년 3월의 전국인대에서는 보수파의 반발로 물권법의 제정을 보류하는 심각한 사태를 맞기도 하였다.⁷⁾ 2007. 3. 16일 오전 제10기 전국인대 5차회의의 마지막날 전체회의를 열어 물권법을 찬성 2,799표, 반대 52표, 기권 37표로 압도적으로 통과시켜서 주석령 제62호로 공포하였다. 이번에 제정된 중국 물권법은 총칙, 소유권, 용익물권, 담보물권 등 총 5편, 제19장, 제247조로 구성되었는데 2007. 10.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물권법의 주요 내용은 국가의 기본 경제제도의 보호,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질서유지, 물권의 주체 명시, 물권의 효용성, 권리자의 물권 보호 등이다.

5) 中国法制出版社, 「中华人民共和国物权法」, 2007, p.40.

6) 2005년 6월 8일과 6월23일 法律委員會에서의 재차심의에는 最高人民法院 관련 인사들도 참석하였다. 2차 審議稿 총22장 297개의 조항에서 2개의 장 및 61개의 조항을 삭제하고 33개의 조항을 추가하여 최종 20장 268개의 조항이 구성되었다. 金容吉, 朴冬梅, “中國의 物權法 制定動向에 관한 考察”, 「成均館法學」, 第18卷 第3號, 成均館大學校 比較法研究所, 2006, p.242.

7) 上揭論文, p.239.

2. 中國 物權法의 概要

물권법은 등소평의 "3개 대표"의 중요사상을 모범으로 삼아 실제적인 과학발전의 관점에서 정확한 정치방향을 견지하고 사회주의 기본경제제도를 전면적으로 구현하고자 하며, 헌법과 법률제정에 의거하여 국가와 집단과 개인의 물권에 대해 평등한 보호를 원칙으로 하고 동시에 국유재산의 보호를 강화하면서, 농촌의 기본정책을 마련하여 거대 농민군중의 이익을 보호하며, 현실생활 중에 절박하게 필요한 민사문제에 대해 통일된 계획을 세우고 조화사회를 촉진하고자 하였다.⁸⁾ 이러한 원칙에 따라 각 부문의 합리적인 의견과 건의를 수렴하고 반복적으로 연구 개선하여 충분히 평가한 후 10기 전국인대 상임위 5차회의에서 초안이 결정되었다. 2007.1.12일 물권법 초안을 전국인대 대표에 발송했고 토론 중 제출된 의견에 따라 약간 수정된 후 물권법 초안이 전국인대에 제청되었다.⁹⁾ 물권법은 총칙과 소유권, 용익물권, 담보물권, 점유 등 모두 5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는 기본적으로 대륙법계의 민법 편제를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3. 物權法의 主要 內容

(1) 總則

1) 基本原則

총칙은 물권법의 일반론으로서 물건, 물권의 정의, 내용 및 물권법의 원칙 등을 정하고 있다.¹⁰⁾ 물권의 본질은 일정한 물건을 직접 지배하고 더불어 이익에 대한 배타적인 권리를 가지는 것이다.¹¹⁾ 물권법¹²⁾ 제1조는 물권법의 입법 목적을 명확히 밝히고 있는데 「국가의 기본 경제제도와 사회주의 시장경제질서를 유지, 보호하고 물건의 귀속을 명확하게 하며, 물건의 효용을 충분히 발휘하고, 권리자의 물권을 보호하도록」하고 있다. 물권법의 기능을 규정하고 있는 제2조는 물건의 소유 및 이용에 관한 민사관계는 물권법을 적용하고, 부동산 및 동산이나 기타 법률에 정한 권리도 물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물권법상 물권의 종류는 소유권과 점유가 있고, 용익물권으로는 토지도급경영권, 건설용지사용권, 택지사용권, 지역권 등이 있으며, 담보물권으로는 저당권과 질권, 유치권 등이 있다.

8) 王勝明主編, 「中華人民共和國物權法解讀」, 中國法制出版社, 2007, p.3.

9) 黃松有主編, 「中華人民共和國物權法—條文理解與適用」, 人民法院出版社, 2007, p.30.

10) 梁彗星教授와 王利明教授의 입법건의안 物權法에 총칙 규정을 두는 것에 대하여 입장을 같이한다. 梁彗星, 「中國民法典草案建的稿附理由(物權編)」, 法律出版社, 2005, p.1; 王利明, 「中國民法典學者建議稿及立法理由(物權編)」, 法律出版社, 2005, p.1.

11) 崔建遠 "物權效力一般理論", 「法學雜誌」, 第2003年 第4期 總第139期, 法學雜誌社, 2003, p.16.

12) 이하 본고에서 사용하는 中國 物權法은 이를 특정하지 않고, 그 이외의 법률은 특정하기로 한다. 아울러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條, 項, 號, 目'은 중국법상에서는 이를 '條, 款, 項, 目'으로 표시한다.

2) 物權法定主義

물권의 종류 및 내용은 법률이 정한다고¹³⁾ 함으로써 物權法定原則을¹⁴⁾ 채용하였다. 다만 제8조는 기타 법률에 물권에 대한 별도의 특별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고 하여 물권법 이외의 다른 법률에서 물권의 종류와 내용을 창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가, 집단(集體), 개인의 물권과 기타 권리자의 물권은 법률의 보호를 받으며, 어떠한 단위(單位)나 개인도 이를 침범해서는 안 되며, 물권의 취득과 행사시에는 법률을 준수하고, 사회공중도덕을 존중하여야 하며 공공이익과 타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의무조항을 두고 있다. 따라서 물권은 반드시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3) 公示制度

公示原則은 각종 물권 변동을 외부에서 알 수 있는 방식으로 나타내는 것을 가리킨다.¹⁵⁾ 물권은 절대성과 배타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물건에 하나의 물권이 성립된 후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다면, 제3자는 불측의 손해를 면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누구라도 인식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공개된다면 제3자는 외부에서 물권의 상황을 알 수 있고, 거래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므로 실제상 시장경제의 거래질서를 보호하여 권리분쟁을 감소시킬 수 있게 된다.¹⁶⁾ 이에 따라 부동산 물권의 성립, 변경, 이전 및 소멸은 반드시 법률에 따라 등기하여야 하고, 동산물권은 인도하여야 한다¹⁷⁾고 하여 공시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부동산물권변동은 부동산등기부에 기재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며¹⁸⁾ 부동산등기부는 등기소에서 관리하게 함으로써¹⁹⁾ 현재 난립하고 있는 등기소를 통일하고²⁰⁾ 이를 통해서 부동산시장을 관리 감독하려고 하고 있다. 등기에 공신력을 부여하는 것은 물권공시의 신뢰를 높이고, 제3자의 이익 보호 내지 거래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등기의 효력발생요건의 기초는 등기의 공신력이며²¹⁾ 등기제도가 공신력의 요구를 만족시키지 못하면 사상누각이 되게 된다.²²⁾ 부동산 소유권증서에 기재된 사항은 등기부에 기재된 내용과 일치하여야 하

13) 物權法定原則은 물권의 종류와 내용을 직접 법률의 규정에 의하며 당사자의 자유로운 창설을 금지한다; 尹田, "物權法定原則批判之思考", 「法学杂志」, 第2004年 第6期 總第147期, 法学杂志社, 2004, p.8.

14) 物權法定原則은 物權法 구조상 중요한 支柱중의 하나이며 물권법상 최고로 특색있는 기본원칙중의 하나로써 20세기 이래 가장 많이 비판을 받은 원칙의 하나이다. 尹田, 前揭論文, p.8.

15) 王利明, 「我國民法典重大疑難問題之研究」, 法律出版社, 2006, p.232.

16) 上揭書, p.233.

17) 中國 物權法 제6조는 物權 公示原則에 대한 규정이다. 全國人大常委會法制工作委員會民法室編, 「中華人民共和國物權法條文說明-立法理由及相關規定」, 北京大學出版社, 2007, p.7.

18) 中國 物權法 제14조는 법률에 따라 등기한 부동산물권변동의 성립, 변경, 양도 및 소멸의 효력발생 규정이 다. 王麗明, 前揭書, p.33.

19) 中國 物權法 제16조는 독일 민법 제891조(法律上 推定) 및 제892조(不動產登記簿의 公信力)을 참고하였다. 全國人大常委會法制工作委員會民法室編, 前揭書, p.25.

20) 중국은 현재 등기소의 "多頭執政"(난립) 또는 근거한 법률이 저마다 달라 체계적인 부동산 공시제도가 구축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孫憲忠, 「論物權法」, 法律出版社, 2001, p.478.

21) 물권법 제12조는 등기소의 실질심사제도를 규정하고 있고 제21조는 등기소의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함으로써 등기의 공신력을 강하게 뒷받침하고 있다.

며, 그렇지 않을 경우 부동산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제17조)고 하여 권리추정적 효력을 강하게 선언하고 있다.

(2) 所有權

물권법 제2편 소유권은 일반규정을 시작으로 국가, 집단 및 개인소유권과 건물구분소유권, 상린관계, 공유, 소유권취득의 특별규정 등을 정하고 있다. 특히 개인재산보호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물권법은 개인소유권에 대해 규정하고 건물구분소유권 개념을 도입하였다. 개혁·개방전에 사유재산권은 국가소유권에 비하여 차별적인 법의 보호를 받았으나²³⁾ 사회주의 시장경제체도가 정착된 이후에는 사유재산보호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소유권자는 자기의 부동산이나 동산에 대하여 법률에 따라 점유, 사용, 수익 및 처분할 권리를 갖는다고 하여²⁴⁾ 법률의 범위내에서 소유물에 대한 전면적이고 지배적인 물권을 인정하고 있다.²⁵⁾ 아울러 소유권자는 자기의 부동산이나 동산에 用益物權이나 擔保物權을 설정할 권리가 있다고(제40조) 하여 제한물권을 인정하고 있다. 국가소유권²⁶⁾은 국가가 전인민을 대표하여 전인민소유재산인 국가소유재산을 점유,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이다(민법통칙 제73조). 물권법은 국유재산의 범위, 국가소유권의 행사와 강화, 국유재산의 보호에 대해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집단소유권은 근로대중의 집단경제조직이 자기의 재산을 점유, 사용, 수익, 처분하는 권리(민법통칙제74조)를 말한다. 도시와 읍의 집단기업은 지난 1950년대 이래로 계속 형성되어 왔는데²⁷⁾ 집단소유(集體所有)는 공유제의 중요한 구성부분이다. 個人所有權은 공민 개인이 자기의 재산을 법률에 따라 점유, 사용, 수익, 처분하는 권리(민법통칙제75조)를 말한다. 중국 헌법 제13조의 원칙에 따라²⁸⁾ 물권법은 제64조 내지 제67조에 개인소유권에 대하여 규정하였다.

(3) 用益物權

- 22) 渠海, “不動產物權變動制度研究与中国的選擇”, 「法學研究」, 第21卷第5期 總第124期, 法學研究杂志社, 1999, p.53.
- 23) 중국은 國家所有權의 신성불가침에 대하여 특별히 강조하였는데, 이는 중국이 제정 초기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 이행하는 역사적 환경에 기초한 것으로 소유권 주체의 성질을 규정하고 이를 보호하고 격려하는 일정한 정책적 경향을 띠었으며 일정한 작용도 발휘하였다. 段匡, “中國物權法立法中存在的若干問題”, 「情報與法研究」, 제7호, 國民大學校 情報與法研究所, 2005, p.16.
- 24) 崔建遠, 前揭論文, p.16.
- 25) 梁彗星·陳華彬, 「物權法」, 法律出版社, 2007, p.111.
- 26) 國家財產이 全民所有財產인데 國家所有權은 국가가 동산과 부동산에 대하여 직접 지배할 권리를 갖는 것을 말하며, 全民所有財產은 國家所有權과 같은 것은 아니다. 全民所有財產은 하나의 정치경제학상의 개념으로 公有制의 高級形態를 말한다. 다만 全民所有財產은 직접 향유하는 일체의 재산권리를 포괄하며 國家所有權도 그 일종이다; 尹田, “論國家財產的物權法地位”, 「法學雜誌」, 第2006年 第3期 總第158期, 法學杂志社, 2006, p.10.
- 27) 王勝明, 前揭書, p.8.
- 28) 中國 憲法 제13조는 “공민의 합법적 사유재산을 침해해서는 아니되고, 국가는 법률에 의하여 공민의 私有財產權 및 상속권을 보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국에서도 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소유자가 타인에게 부동산 및 동산을 사용, 수익하게 하는 것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물권법은 용익물권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²⁹⁾ 중국은 토지 및 자연자원은 국유 또는 농민집단소유로 하고 있는데 개인 또는 경영조직이 국유 또는 집단소유의 토지 및 자연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물권법은 토지도급경영권, 건설용지사용권, 택지사용권, 지역권을 규정하였다.³⁰⁾ 물권법은 개혁개방과 경제발전에 따라 노동으로 힘들게 축적한 재산을 합법적으로 보호하고, 법률의 규정으로 향유한 토지도급경영권, 택지사용권 등의 권리의 보호를 명확히 하며, 인민군중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인민의 재산을 활성화하여 조화사회를 촉진하고자 하였다.³¹⁾ 물권법은 농촌의 기본정책에 따라 농민에게 장기적으로 토지사용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耕地, 草地, 林地의 도급기간 만료시 관련규정에 따라 계속 도급할 수 있다.³²⁾ 용익물권자(用益物權人)는 타인소유의 부동산 또는 동산을 법률에 따라 점유, 사용 및 수익할 권리가 있으며(제117조), 국가 또는 집단인 사용하는 국가소유의 자연자원 및 집단소유의 자연자원도 단위 또는 개인이 법에 따라 점유,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하여 그 대상을 넓히고 있다.

(4) 擔保物權制度

담보물권이란 채권의 실현을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제공한 특정한 물건 또는 권리에 설정한 제한물권이다³³⁾. 중국은 저당권, 질권, 유치권 등 담보물권에 대하여 이미 1995년에 제정된 담보법에 이를 규정하였다. 이러한 담보법의 규정을 토대로 재판실무에 의한 내용을 많이 보충한 물권법은 담보제도를 더욱 완비함으로써 용자를 촉진하고 경제를 발전시키도록 하였다.³⁴⁾ 즉 담보법은 시행된지 이미 10년이 넘어서 그 중의 일부 규정은 현재의 상황에 적합하지 않게 되었으므로³⁵⁾ 물권법상 “담보물권”은 담보법의 기초 위에서 중국의 담보물권제도를 진일보하여 완비하기 위하여 제정한 것이다.³⁶⁾ 담보물권에 대해 물권법은 새로운 규정을 보강하고 담보법의 일부 내용을 수정하였으므로 물권법과 담보법의 규정간에 효력이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물권법 제178조는 “본법과 물권법의 규정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여 이를 해결하고 있다.³⁷⁾ 따라

29) 중국의 일부학자는 物權法에 用益物權制度를 두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 그 이유는 用益物權은 토지 개인소유제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나 중국은 토지공유제를 기본체도로 하고 있어 이를 기반으로 하는 토지사용권, 도급경영권, 택지사용권 등의 제도는 전통 민법상 用益物權制度와 상당한 차이가 있다. 孟勤國, 「物權二元結構論-中國物權制度的理論重構」, 人民法院出版社, 2002, p.21.

30) 梁慧星·陳華彬, 前揭書, p.260.

31) 黃松有, 前揭書, p.29.

32) 上揭書, p.32.

33) 梁慧星·陳華彬, 前揭書, p.301; 王利明, 「物權法論(修訂本)」, 中國政法大學出版社, 2003, p.539.

34) 中國法制出版社, 「中華人民共和國物權法」, 2007, p.46.

35) 全國人大常委會法制工作委員會民法室編, 前揭書, p.317.

36) 王勝明, 前揭書, p.377.

37) 上揭書, p.13.

서 물권법의 시행 이후에도 담보법은 여전히 유효하지만 법률적용에 있어서 담보물권에 관한 부분에서는 물권법의 규정을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 담보권자는 대차, 매매 등 민사활동에서 채권의 실현을 보장하기 위하여 법률에 의하여 담보물권을 설정(設立)할 수 있는데, 제3자가 담보를 제공할 경우 채무자에게 반대담보(反擔保)를³⁸⁾ 요구할 수 있다.

(5) 占有制度

물권법은 점유의 보호와 무권점유자의 권리침해에 대한 책임을 규정하고, 사회질서와 권리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한다.³⁹⁾ 점유는 현대 물권법 중 아주 중요한 내용으로서⁴⁰⁾ 점유란 점유자가 부동산 또는 동산에 대한 실제의 지배를 말하는데 유권점유와 무권점유를 포함한다.⁴¹⁾ 점유는 계약관계등으로 발생하며, 부동산 또는 동산의 사용, 수익, 위약책임등 관련사항은 계약에 따르며, 기타 약정이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법률규정에 따른다. 부동산 또는 동산이 손실된 경우 악의점유자는 배상책임을 부담하며(제242조), 부동산 또는 동산이 점유자에게 점유된 경우 권리자는 원물과 그 과실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나, 선의점유자가 유지보수하기 위해 지출한 필요비용을 지급하여야한다.⁴²⁾ 물권법 제108조는 선의양수인이 동산을 취득한 후 당해 동산의 원권리는 소멸한다고 하여 동산의 善意取得을 인정하고 있다. 점유한 부동산 또는 동산이 훼손, 멸실된 경우 점유자는 그로 인하여 취득한 보험금, 배상금 또는 보상금 등을 권리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손실이 충분히 보상되지 못한 경우 악의점유자는 손실도 배상하여야 한다. 점유부동산 또는 동산이 侵佔된⁴³⁾ 경우 점유자는 원물의 반환청구 및 방해의 배제 또는위험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점유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는데, 원물반환청구권은 침점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행사하여야 한다.⁴⁴⁾

38) 反擔保란 채무자를 위하여 담보를 제공한 자가 자기의 구상권의 실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채무자에게 자기 구상권의 실행을 위한 담보제공을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全国人大常委会法制工作委员会民法室編, 前掲書, p.301; 孔祥俊, 「擔保法及其司法解釋的理解與適用」, 法律出版社, 2001, p.22; 周林彬, 「物權法新論」, 北京大學出版社, 2002, p.721.

39) 上掲書, p.15.

40) 梁彗星·陳華彬, 前掲書, p.397.

41) 王利明, 前掲 中國民法典草案建議稿及說明, p.432.

42) 이 규정으로 권리자는 원물과 그 과실의 반환을 청구 할 수 있다. 全国人大常委会法制工作委员会民法室編, 前掲書, p.431.

43) 物權法 草案 제5차 審議稿에서 侵奪을 侵佔으로 바꾸었다. 이는 '侵佔'이 '侵奪'보다 광범위하며 積極的 不法行爲뿐만 아니라 消極的 不法行爲를 포함하기 때문에 점유보호의 정도를 한층 강화한 것이다. 黃松有, 前掲書, p.710.

44) 본 점유보호규정은 입법과정 중 커다란 논쟁은 없었다. 全国人大常委会法制工作委员会民法室編, 前掲書, p.434; 王勝明, 前掲書, p.521.

Ⅲ. 中國의 仲裁制度

1. 中國 仲裁法の의 制定

중국이 중재법을 제정하게 된 배경은 시장경제의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선 각종 제도가 선진화되어야 외국 자본과 선진기술을 유치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환경하에서 외국인이 직접 투자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였다. 즉 중국의 법원은 전통적으로 공정성과 신뢰성을 갖추지 못하고 합리적인 요소도 매우 적었기 때문에 외국인이 이를 이용할 수 없었으며, 결과적으로 국제관례에 부합하는 중재제도를 정비하는 것은 매우 시급한 과제였다. 중국의 중재제도는 1950년대부터 자연스럽게 형성되었는데 당시에는 경제계약분쟁에 관한 중재가 많았으나 개혁 개방이후인 1980년대는 기술계약이라든가 노동쟁의, 지적재산권, 부동산, 도급 및 임대, 제품품질, 증권발행 및 거래, 토지소유권 등 제반분쟁에 대한 중재 등으로 다양하였다. 1994년 중재법을 제정하기 전에는 14개의 법률, 80여개의 행정법규, 200여개의 지방성 법규가 존재하여⁴⁵⁾ 국가 전체적으로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하였다. 이에 중국정부는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더욱 공고히 하고, 신속하고 공정하게 제반분쟁을 처리하기 위하여 1994. 8. 31. 중재법을⁴⁶⁾ 제정하여 1995. 1. 1.부터 시행해 오고 있다. 중국의 중재법은 그동안의 시행했던 많은 법규들을 정리하는 한편, 뉴욕조약, 워싱턴조약 등 국제조약, UNCITRAL 모델법, ICC 중재규칙 등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규칙 등을 참고함으로써 중국의 중재제도에 대하여 일대 개혁을 단행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⁴⁷⁾ 특히 UNCITRAL 모델법을 많이 참고하였으나 현실적으로 상당한 문제점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2. 仲裁規則의 制定

중국의 중재제도는 40여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중국의 중재기구에는 국내중재기구와涉外중재기구로 나눌 수 있으며,⁴⁸⁾ 국내중재기구로는 중재위원회가 있고,涉外중재기구로는 국제경제무역중재와 해상중재로 나뉘어 발전하였다. 중국은 국내중재에 대해서 중재잠정규칙을 1956년에 제정한 후 1988년, 1994년, 1995년에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국제경제무역중재에 대해서는 1954년 5월 4일에 제215차 정무회의에서 대외무역에서 발생하는 각종

45) 이주원, “중국 중재제도의 특징에 관한 소고”, 『중재연구』, 제15권 제3호, 한국중재학회, 2005, p.116.

46) 중재법의 제정 이전에는 중재제도에 대한 통일적인 법제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중재잠정규칙은 1956년에 제정된 후 1988년, 1994년, 1995년에 개정되었다.

47) 全國人大常委會法制工作委員會, 『中華人民共和國仲裁法律釋評』, 法律出版社, 1996, p.1.

48) 국내 중재와涉外중재는 중재절차(程序)와 중재규칙에서는 별 차이가 없고 중재위원 명단 및 중재 판정(裁決)의 집행 등에서만 차이가 있다. 江平, “中國의 仲裁制度”, 『仲裁研究』, 제13권 1호, 한국중재학회, 2003, p.14.

분쟁을 중재방식으로 해결하고자 중국 국제무역촉진위원회내에 대외무역중재위원회를 설립하도록 하고, 그에 관한 행정법규를 제정하였다. 그 후 1956년 3월 31일에 중국 국제무역촉진위원회는 중재절차규칙을 제정하고, 대외무역중재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무역분쟁을 중재하는 기구가 북경에 설립되었고, 1958년에는 중국해사중재위원회(China Maritime Arbitration Commission, 이하 'CMAC'라 한다)가 설립되었다.⁴⁹⁾ 그 후 등소평의 개혁, 개방 정책에 따라 1979년에 중외합자경영기업법을 제정한 후 1980년 2월 26일 기존의 대외무역중재위원회를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China International Economic Trade Arbitration Commission, 이하 'CIETAC'라 한다)로 개편하면서 그 역할을 더욱 강화하였다.

중국은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에 관한 조약(뉴욕조약)에 1986년에 가입하였고, 1987년에는 GATT의 회원국 지위를 회복하기 위한 신청을 하였다. 1988년에 '다자간 투자담보 기구조약'에 가입하고, 그 해 9월 12일에 CIETAC는 새로운 중재규칙을 제정하여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 1991년 4월 9일 제7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4차 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이 제정되고 중재법이 1995년 9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중재법과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1995년 10월 1일부터 개정된 CIETAC의 중재규칙을 시행한 후 2000년 10월 1일부터 CIETAC의 중재규칙을 재개정하였다.⁵⁰⁾ CIETAC은 2004년 7월 5일 기존의 중재규칙을 개정 결의하여 2005년 1월 11일에 통과된 후 2005년 5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 이 중재규칙을 통하여 중국은 당사자자치를 최대한 존중 하는 등 중국은 중재법 및 중재제도상의 많은 문제점들을 해결하였다.

3. 中國 仲裁法의 體系

(1) 仲裁法上 規定

중국의 중재제도는 기본적으로 중재법에 근거한다. 중재법을 제정하기 이전까지는 개별 법률, 행정법규 및 지방법규에 산재되어 있었던 중재에 관한 규정이 중재법의 제정으로 기본적으로 모양을 갖추었고, 중재규칙에 의하여 형성된 중재법규로 인하여 그 법적체계를 완비하게 되었다. 중재법은 입법기관인 전국인대에서 제정하는 것으로서 중재행위에 대하여 합법성을 부여하고, 중재계약, 중재기구, 중재절차, 중재판정의 집행 등 중재 당사자들간에 관계를 정하고 중재에 관한 기본적인 절차 등을 정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이다. 따라서 중재법은 중재에 참여하는 모든 당사자들을 기속함으로써 강제적인 법규범으로서 작용을 한다. 중재규칙은 일반적으로 중재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절차

49) 이 두 중재기구는 민간기구로 전문적으로 섭외안건을 수리한다. 중국의 중재규칙은 기본적으로 세계적 추세에 따르며, 주요 수리안건은 中外合資企業, 合作企業의 분쟁과 무역분쟁이다. 江平, 前揭論文, p.12.

50) 중국은 이를 통해 CIETAC이 국내중재사건을 처리하도록 하고 중재절차의 지연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절차를 수정하였다. 尹晉基, "중국 중재법", 「기업법연구」, 제12집, 한국기업법학회, 2003, p.239.

규범으로서 성질을 가지는데 이는 중재기구가 미리 일정한 형식으로 정한 중재규칙과 당사자간에 합의로 정한 중재에 관한 사항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당사자가 스스로 중재규칙을 선택하는 경우에 대하여 그 적용을 할 수 있고 그런 경우에 당사자간에 일정한 구속력을 갖게 된다. 중국의 경우에는 중재위원회가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당사자가 중재규칙을 선택할 수 있다.⁵¹⁾ 중재규칙은 중재에 관한 절차법규이지만 상위규범인 중재법의 구속을 받으므로 중재법에 규율된 강행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을 인정받지 못하게 된다. 특히 중재법은 중재법시행이전에 제정된 중재관련 규정이 중재법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중재법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중재법 제78조). 중국의 중재규칙으로涉外중재에 적용되는 것은 CIETAC의 중재규칙과 CMAC의 중재규칙이 있고, 각 지방중재위원회는 별도로 중재규칙을 가지고 있다.

(2) 仲裁法과 다른 法律과의 關係

1) 民法通則 및 契約法과의 關係

당사자가 중국의 사회주의 시장경제 질서하에서 경제활동을 영위하면서 법률관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민법통칙과 계약법이 그 실제적인 기준이 된다. 특히 쌍방간에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계약에 따른 법률적인 해석이라든가 효력여부 등은 이러한 민사 실체법을 적용하게 된다. 계약의 경우 당사자는 각 조항에 분쟁발생시를 대비하여 중재조항을 포함시킬 수도 있다.(중재법 제16조) 중국에서는 1999년 3월 15일자로 통과되어 10월 1일자로 발효된 신계약법은⁵²⁾ 경제합동법,涉外경제합동법 및 기술합동법을 통합하였는데 이 경우에 3개의 계약법에 규정된 중재시효에 관한 규정들도 통일계약법의 관련규정으로 대체되었다. 통일계약법은 시효에 관한 특칙을 두었는데 국제화물매매계약과 기술수출입계약의 분쟁으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중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그 권리침해의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로부터 계산하여 4년내에 소송제기나 중재신청을 하여야 한다.(계약법 제129조) 국제화물매매계약과 기술수출입계약은 그 이행에 장기간 소요되고, 계약대금이 거액이기 때문에 일반적 시효를 적용하면 계약당사자의 권리를 제대로 보호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시효를 연장하여 규정하고 있다.⁵³⁾이 두가지 계약을 제외한 다른 일반적 계약의 시효는 민법통칙이 적용되고 그 기간은 2년 혹은 1년이다(민법통칙 제135조 및 136조). 또 중재절차에 있어서 조정이 행해지는 경우의 원칙, 방법 등도 민사소송법 및 관련법률에 의하여 규정되어 있다. 중재판정이 사회공공이익에 반하는 경우 그것을 취소하는 경우는 민법통칙 제150조가 적용될 것이다.⁵⁴⁾

51) 上揭論文, p.242.

52) 1999년의 계약법의 시행으로 중국 정부는 채권자를 강하게 보호하도록 하였으며, 실제적으로도 그러한 이행이 촉진되었다. Jason Pien, "Creditor Rights and Enforcement of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l Awards in China", 45 Colum. J. Transnat'l L. 586, at 586 (2007).

53) 尹晋基, 前揭論文, p.241.

2) 民事訴訟法과의 關係

민사소송법과 중재법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중재절차에 있어서 재산보전, 증거보전, 중재판정의 심사, 중재판정의 집행에 대해서는 어느 것도 중국법원의 협력을 얻지 않으면 안되지만, 중국 법원이 중재절차에 협력하고 또는 중재판정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에 따라 절차를 행하는 것으로 된다. 민사소송법 제25조는 “계약의 쌍방 당사자가 서면 계약으로 합의를 통해 피고 주소지, 계약이행지, 계약체결지, 원고 주소지, 목적물 소재지의 인민법원으로 관할을 선택할 수 있다. 다만, 심급관할(級別管轄)과 전속관할(專屬管轄)의 규정은 위반할 수 없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중재의 장점은 지역관할 제한이 없으며 심급관할과 전속관할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⁵⁵⁾ 민사소송법 제255조도 “섭의 경제무역, 운수 및 해상간에 발생한 분쟁은 당사자가 계약으로 중재조항을 정하거나 사후에 서면으로 합의하는 경우에는 중국 중재설외기구 또는 기타 중재기구의 중재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당사자는 인민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고 하고 있다. 중재의 시효에 대하여 중재법이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소송시효의 규정을 적용한다(중재법 제74조). 이외에 중재위원회는 중재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중재법을 기준으로 하지 않으면 안되지만 민사소송법도 참조해야 한다.(중재법 제15조, 제73조, 제75조)⁵⁶⁾ 중재에 의한 분쟁의 해결이 불가능한 경우 중국 법원은 민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는 절차에 따라, 재판에 의해 실질적인 중국 판단을 내리게 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민사소송법은 중재법 및 중재절차의 보루라고 할 수 있다.⁵⁷⁾

4. 中國 仲裁法의 主要 內容

(1) 仲裁法의 適用範圍

중재법 제2조는 자연인, 법인, 기타 조직 등 평등한 권리주체간에 발생한 계약상의 분쟁과 재산권에 관한 분쟁을 중재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계약상의 분쟁’에는 매매계약, 건설공사도급계약, 화물운송계약, 가공수주계약, 창고보관계약, 임대차계약, 리스계약, 기술계약 등에 관한 분쟁이 포함되고, ‘재산권에 관한 분쟁’에는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의장권 등에 대한 분쟁이 포함된다.⁵⁸⁾ 행정기관의 처분에 관한 쟁의나 혼인, 입양, 후견, 부양, 상속 등에 관한 분쟁은 중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 외에도 노동쟁의나 농업집단경제조직 내부의 농업도급계약 분쟁의 중재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율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으며

54) 李萬熙, “새로이 제정된 中國의 仲裁法에 관한 연구”, 「법조」, 482호, 한국법조협회, 1996, p.42.

55) 江平, 前掲論文, p.14.

56) 尹晉基, 前掲論文, p.241.

57) 李萬熙, 前掲論文, pp.42~43.

58) 上掲論文, p.31.

로, 중재법의 적용범위에서 제외된다.

(2) 仲裁組織

중재조직은 중재위원회, 중재위원, 중재협의회 및 중재정, 중재원으로 이루어진다. 중재법에 따라 설립되는 중재위원회의 정관(장정)은 중재법에 의거하여 제정되어야 한다. 중재위원회는 주임 1명, 부주임 2명 내지 4명, 7명 내지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그 중 3분의 2 이상이 법률 또는 경제, 무역의 전문가이어야 한다.(중재법 제12조) 중재위원회의 권한으로는 (1) 중재안건 수리의 결정권(중재법 제24조), (2) 당사자의 위임에 따라 중재위원회 주임이 중재정을 구성할 중재원을 지명할 권리, (3) 중재원의 위법행위시에 제명 등의 처분을 할 권리 등이 있다. 중재법상 중재원이 되기 위한 자격요건으로 “중재위원회는 공정한 자 가운데서 중재원을 초빙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조건을 열거하고 있다.(중재법 제13조) 섭외중재위원회는 법률, 경제, 무역, 과학 및 기술 분야에서 전문지식을 가진 외국인 중에서도 중재원을 선임할 수 있다.(중재법 제67조) 이와 같이 중재원의 선임에 대하여 비교적 엄격한 자격요건을 요구함으로써 중재원들의 업무능력이나 자질이 실제로 중국의 인민법원 법관들의 평균 수준보다도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3) 仲裁庭

중재정은 3인의 중재인으로 구성되는 合議仲裁庭과 1인의 중재인으로 구성되는 獨任仲裁庭으로 구분된다. 합의중재정의 구성은 당사자가 각 1인을 선정하거나 중재위원회 주임에게 위임하여 선정할 수 있고, 의장중재인은 당사자가 합의하여 선정하거나 합의하에 중재위원회 주임에게 위임하여 선정하게 할 수 있다.(중재법 제31조) 당사자가 중재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의장중재인을 합의하여 선정하지 못하면 중재위원회 주임이 직권으로 의장중재인을 선정한다. 중재정의 권한에는⁵⁹⁾, 중재협의의 효력 유무에 대한 확인권(중재법 제19조), 중재절차의 개시여부 결정권(중재법 제37조), 중재의 개정에 대한 공개 여부와 연기여부의 결정권(중재법 제40조, 제41조), 필요시 증거수집권(중재법 제43조)⁶⁰⁾, 전문적인 문제에 대하여 전문가에게 감정을 의뢰할 권리(중재법 제44조), 조정권(중재법 제51조), 중재판정권(중재법 제53조) 등이 있다.

(4) 仲裁 審理節次

CIETAC에서는 당사자가 분쟁을 중재위원회에 중재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모두 중재

59) 仲裁庭의 權能에는 證據의 許容性, 關聯性, 중요성 내지 證明能力을 결정하는 權能이 포함되어 있다. 胡光輝, “國際商事仲裁管理をめぐる 實效性の確保-中國國際商事仲裁における 證據と暫定的保全措置を中心に-”, 「早稻田大學法學會誌」, 제55권, 早稻田大學法學會, 2005, p.189.

60) 중재에 있어서 證據책임은 완전히 당사자에게 있다. 胡光輝, 前掲論文, p.192 ; 당사자는 자기가 행한 주장에 관하여 증거를 제출할 책임이 있다. 中華人民共和國 民事訴訟法 제64조 1항.

규칙에 따라 중재하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당사자자치가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다.⁶¹⁾ 당사자가 중재를 신청할 때는 중재위원회에 중재합의서와 중재신청서 및 그 부분을 제출하여야 한다. 중재신청을 제출할 때에는 중재시효를 지켜야 한다. 중재법 제74조는 “법률에서 중재시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규정에 따른다. 법률 중에 중재시효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소송시효의 적용을 받는다”고 정하고 있다. 중재신청이 제출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 중재위원회는 중재신청서를 받은 후 그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여 수리조건에 부합하면 이를 수리하고 5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수리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할 때에는 당사자에게 수리하지 않는 취지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중재법 제28조는 “상대당사자가 다른 당사자의 행위 또는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중재판정의 집행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어렵게 될 경우, 당사자는 이를 원인으로 하여 재산의 보전을 신청할 수 있다”고⁶²⁾ 하고 있으며, 당사자가 증거보전을 신청한 경우, 중재위원회는 민사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증거소제지의 중급인민법원에 이송하여 인민법원이 결정하도록 한다.(중재규칙 제23조)⁶³⁾ 중재정은 원칙적으로 구술심리를 개최야 한다.(중재법 제39조)⁶⁴⁾ 다만, 당사자 사이에 구술심리를 하지 않기로 합의된 경우에는 중재정은 중재신청서, 답변서 및 기타 증거서류 등 서면자료에 근거하여 중재판정을 할 수 있다. 중재는 원칙적으로 비공개로 진행한다. 당사자 사이에 공개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공개진행을 할 수 있으나, 국가비밀에 관계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仲裁裁決 및 執行

중재법에 따르면 중재판정(裁決)은 다수결의 원칙에 입각하여 다수 중재원의 의견에 따라 내려진다. 소수 중재원의 다른 의견은 중재판정서에 기입할 수 있다. 仲裁庭이⁶⁵⁾ 다수 의견을 형성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중재인의 의견에 따라 내려진다.(중재법 제53조) 仲裁庭은 그 구성된 날부터 9개월 이내에 중재판정을 내려야 한다. 그러나 중재정의 요구로 중재위원회 비서장이 필요하고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중재판정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중재규칙 제52조) 중재법 제58조는 “당사자가 입증할 증거를 제시하는 경우 중재위원회 소재하는 곳의 중급인민법원에 중재판정 취소 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당사자가 재중재판정 취소 신청을 할 때는, 중재판정서를 송달 받은 날로부터 6

61) 이주원, 前揭論文, p.124.

62) 胡光輝, 前揭論文, p.206 ;

63) 中华人民共和国 民事诉讼法 제258조.

64) 당사자에게 의견진술과 증거제출에 대해 충분한 기회를 주어야 하기 때문에, 중재인은 어떤 중요한 점이 있는가를 당사자에게 개시하고, 그 점에 관한 인식을 공통화하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 小島武司, 「仲裁法」, 靑林書院, 2000, p.230.

65) 중재절차의 원활한 진행 및 중재판정의 집행을 확보 등이 요청되어 보전조치는 필요불가결하다. 중재정에 보전조치를 명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국제적인 추세이다. 胡光輝, 前揭論文, p.214.

개월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인민법원은 그 신청을 수리한 날로부터 2개월 내에 중재판정 취소 또는 신청 기각의 재정을 하여야 한다. 중재법에 의하면, 일방 당사자가 중재판정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 타방 당사자는 민사소송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인민법원에 그 집행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받은 인민법원은 중재판정서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국내중재의 경우, 피신청인은 중재판정이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2항에 열거된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인민법원에 중재판정 불집행을 신청할 수 있고, 인민법원은 합의정을 구성하여 이를 심사하고 이유가 있을 경우 중재판정의 불집행을 재정할 수 있다.⁶⁶⁾ 섭외중재의 경우에는, 당사자가 민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에 열거된 사유 중의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증명한 경우에, 인민법원은 중재판정을 취소하는 재정을 하거나(중재법 제70조), 중재판정의 불집행을 재정할 수 있다.(중재법 제71조) 중재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면, 일방 당사자가 중재판정의 집행을 신청하고 타방 당사자가 중재판정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에 인민법원은 집행을 중지하여야 한다. 인민법원이 중재판정을 취소하기로 재정할 경우에는 집행을 종결하는 재정을 하여야 한다. 중재판정 취소신청을 기각할 경우에는 인민법원은 집행을 회복하는 재정을 하여야 한다.

5. 中國 仲裁法의 特徵 및 問題點

(1) 中國 仲裁法의 特徵

우선 중국의 중재기구는 국내중재의 경우 성, 자치구, 직할시 및 구가 설치된 시의 인민정부가 중재위원회를 조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중재법 제67조), 행정기구로서의 성격이 강하다. 섭외중재의 경우에도 '사회단체'인 '중국국제상회' 내에 중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데 중국국제상회는 사실상 국무원 대외무역부의 감독 하에 놓여 있고, 실질적 책임자 역시 중국 고위 당직자들이 담당하고 있다. 중국의 중재법에서는 중재협의를⁶⁷⁾ 있어서 중재위원회의 선정을 필요적 요소로 규정하고 있으며, 중재인의 선임에 있어서 당사자의 선정과 중재기구의 지정을 결합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중재절차에 있어서는 그 절차가 비교적 구체적이지만 당사자가 중재규칙을 선정하거나 변경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중국의 중재법은 다수결에 의하여 중재판정이 내려지지 않는 경우에 의장중재인의 의견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 중재원은 서명하지 않을 수 있다.

66) 胡光輝, 前掲論文, p.190.

67) 중재협의를 반드시 서면에 의한 의사표시를 요하는데, 계약에 포함된 중재조항 또는 분쟁 발생 전이나 후에 독립하여 서면으로 체결하는 중재협약에 의한다. 중재법 제16조는 중재협약이 유효하기 위한 요건으로 그 내용 중에 (1) 중재를 청구하는 의사표시, (2) 중재사항, (3) 중재위원회의 선정 등 3가지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록 규정하고 있다.

(2) 中國 仲裁法の 問題點

중국의 중재제도에는 몇가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⁶⁸⁾ 우선 중재법은 중재판정의 집행시효에 관한 구체적 규정을 두지 않고 민사소송법 제219조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민사소송법에는 쌍방 혹은 일방이 개인일 경우 1년, 쌍방이 법인일 경우 6개월로 정하므로써 아주 짧게 정하고 있다. 아울러 중재법 제59조에서 당사자가 중재판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중재판정서를 송달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취소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 기간은 다소 길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중재법 31조는 합의중재정의 구성할 경우에 당사자가 각 1인을 선정하거나 중재위원회 주임에게 위임하여 선정할 수 있고, 의장중재인은 당사자가 합의하여 선정하거나 합의하여 중재위원회 주임에게 위임하여 선정하게 할 수 있으나, 만약 당사자가 중재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의장중재인을 합의하여 선정하지 못하면 중재위원회 주임이 직권으로 의장중재인을 선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중재절차의 독립성을 해칠 위험이 크다고 할 수 있다. 한편, 국내중재의 경우 법원이 집행 단계에서 실제적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문제가 많지만, 규정상 실제적 심사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섭외중재의 경우에도 사실상 중국 법원이 '증거 흠결' 등을 이유로 중재판정의 집행에 응하지 아니하는 예가 많다. 끝으로 현재 CIETAC 중재위원회의 중재인 명부에는 대부분 중국인이 중재인으로 구성되어서 외국 당사자에게는 언어상의 문제 등으로 중재인의 문화적 중립성을 보장받기 어렵다는 것이 문제로 지적된다.⁶⁹⁾

IV. 物權法上 紛爭解決에 관한 仲裁制度의 適用可能性

1. 物權의 保護

중국 물권법은 우선 재산관계를 규율하는 민사기본법률로서 물건의 귀속과 이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사관계의 생성을 조정하며, 국가, 집단, 개인과 기타 권리인의 물권 및 물적보호에 대하여 명확하고 있다. 물권제도상의 공통성 문제와 현실생활 중에 절실한 규범문제를 규정하여 명확한 물건의 귀속을 밝히고, 분쟁을 멈추도록 하고, 물건의 효용을 발휘하고, 권리인의 물권을 보호하여 사회주의 물권제도를 완성하도록 하고 있다. 중국 물

68) 成百營, “中華人民共和國仲裁法の 內容과 問題點 考察”, 한중법학회 제18회 정례학술발표 논문, 1998, p.26.

69) 上揭論文, p.34.

권법은 사회주의 기본경제제도의 수요를 견지하면서, 국유재산과 집단재산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국가와 집단의 소유권행사, 국유재산과 집단재산의 보호의 강화, 공유제 경제를 견고하게 발전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사유재산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법에 따라 보호하며, 비공유제 경제의 발전을 지지하고 이끄는 데 유익하도록 하고 있다. 물권법을 통해 소유권과 용익물권 및 담보물권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 각종 시장주체의 평등한 법률지위와 권리를 보장하며, 법에 따라 권리자의 물권을 보호하고,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발전에 대해 중요한 작용을 하도록 한다. 특히 물권법은 인민군중의 이익을 옹호하여 개인소유권, 건축물구분소유권, 토지도급경영권, 주택지사용권 등의 보호를 명확히 하여 인민군중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재산을 늘리고, 조화사회를 촉진하도록 한다. 물권법은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목표에 따라 중국의 사회주의 법률체계를 지지하는 역할을 하며 중요한 법률로 중국적 특색을 갖고 있다.⁷⁰⁾

2. 仲裁制度의 適用可能性

(1) 概說

광의의 민사분쟁을 공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에는 재판에 의한 경우와 재판이외의 방법의 경우 등 2 가지가 있다. 후자 즉 소송절차에 의하지 않은 방법에도 주요한 것으로 인민조정위원회에 의한 조정이나 중재위원회에 의한 중재가 있다. 중국에서는 민사분쟁의 해결수단으로서 조정이 이용되고 있었던 역사는 고유법시대부터라고 한다. 신중국 성립후의 인민조정제도는 혁명근거지의 대중참가형의 인민조정을 기본적으로 도입한 것이다. 인민조정에 관해서 전국적인 법제상의 통일을 도모하기 위한 입법이 1954년 2월에 정무원공포의 인민조정위원회조직통칙이 있다. 54년 통칙에는 인민조정위원회의 임무는 민간의 민사분쟁 및 경미한 형사사건을 조정하고, 더 나아가 조정을 통하여 정책·법령의 선전교육을 행하는 것이라고 하고 있다⁷¹⁾. 그러나 현행 중재제도는 전술한 바와 같이 중재법이 따르고 있다. 중재법은 중재의 기본법이다. 중재법은 경제적 분쟁에 관하여 공정하고 시의적절한 중재를 보장하고,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제1조), 중재의 범위에 관해서는 중재법 제2조에서, 평등한 법주체간인 공민, 법인 및 기타 경제단체간의 계약상의 분쟁 또는 기타의 재산권과 관련한 분쟁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제기되는 문제가 물권법상의 분쟁 예컨대, 토지소유권·사용권의 침해와 관련하여 생긴 분쟁해결에 관하여서도 중재법을 적용할 수 있는 가이다.

70) 侯水平·黃果天, 『物權法爭點詳析』, 法律出版社, 2007, p.11.

71) 木間正道·鈴木賢·高見澤·磨, 宇田川幸則, 『現代中國法入門(第4版)』, 有斐閣, pp.260-261.

(2) 仲裁可能性

1) 仲裁可能性의 意義

어떤 다툼을 중재의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경우에 이와 같은 다툼을 중재가능성이 있다고 말한다.⁷²⁾ 중국 중재법 제3조에서는 중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분쟁으로서 ① 혼인, 입양, 후견, 부양 및 상속관련분쟁 ② 행정기관이 해결하도록 법으로 규정된 분쟁 등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중재법 제3조에서 정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으로서 경제적 분쟁에 관하여서는 중재가능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당사자 일방이 부동산 소유권이전을 청구하는 경우에 다른 상대방은 그 원인관계가 ‘개인적 영리를 위해 기만행위를 한 경우’에 발생한 채무로서, 그 원인관계가 취소의 원인이 된다는 것을 주장하는 경우 등에 있어서의 중재가능성 문제이다.⁷³⁾ 중국 중재법 제58조에는 중재판정의 취소사유로서 ‘개인적 영리를 위해 기만적행위를 한 경우’(동법 6호)를 들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권리관계에 관해서는 중재가능성이 없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일본에서는 도박행위에 기한 채무 등에 있어서 이것과 관련하여 화해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이러한 행위는 공서양속에 반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권리관계에 관해서는 중재가능성이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통설이다⁷⁴⁾. 따라서 통설에 의하면, 당해 권리관계가 도박행위에 기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중재가능성의 판단을 할 수 없는 것으로 될 것이다. 그러나 심리의 결과 당해 권리관계가 도박행위에 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명백하게 되면, 중재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게 된다. 한편 중재가능성을 사법상의 화해의 유효·무효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통설을 채용할 수 없다는 견해도 있다.⁷⁵⁾

결론적으로 중국 중재법상의 중재가능성의 문제는 동법 제3조와 제58조를 종합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2) 紛爭解決節次에 있어서의 互助의 理念

중국은 1980년대 초부터 말단사회의 규율향상, 주민자치 및 정치참가 등의 서로 다른 동기에 의하여, ‘鄉規民約’의 추진이 보급되었다. 그런데 산업시장경제의 발전에 따른 법제 정비를 배경으로 오늘날의 ‘鄉規民約’은 합법적 권리의 보장, 상거래나 경영도급책임제에 관련한 계약 이행, 납세의 독촉, 교통규칙의 준수, 토지소유권·사용권침해행위의 벌칙, 互助의 장려, 지역산업의 진흥에 대해서 약정을 다수 규정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대중적 합의의 철저화에 의한 규범의 효과적인 집행은, 공약의 정당화근거로서 강조된다.⁷⁶⁾ 이와 같이 중국의 전통적인 법제도하에서는 토지소유권 등과 관련하여 생긴 분쟁도 조정

72) 중재가능성은 독일어의 Schiedsfähigkeit, 영어의 arbitrability에 대응하는 용어로서 중재적격성이라고도 한다.

73) 김상수, “仲裁可能性”, 『現代仲裁法の論點(松浦聲, 青山善充 編)』, 有斐閣, p.107.

74) 上掲論文, p.107.

75) 上掲論文, p.108.

76) 李衡東, 前掲論文, p.635.

내지는 중재에 의하여 해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인간관계의 상호성에 기원을 두고 있는 중국법의 정신은 오늘날의 민상사제도의 정비에 있어서, ‘평등호혜(互利)’라는 기본원칙으로 되고 있다. 이 점은 국제적 거래와 투자에 관한 법률의 경우는 물론이고, 국내법에도 호혜성의 발상이 강력하게 존재한다. 예컨대 민법통칙(1986년4월12일 제정)의 민사책임에 관한 제규정은 손해의 공평한 부담을 도모한다는 것에서도 상호성의 발상이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면,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손해를 입은 자는 불법행위자로부터 배상을 받음과 동시에, 수익자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인정조항(민법통칙 제109조) 등이다.

중국에 있어서의 계약적 질서와 법적 질서간의 유동적·애매성을 배경으로, 민상사법에 속하는 대부분의 영역에서는 인간관계의 상호성이지만, 질서의 근원인 계약의 비계약적기반은 충분하다고 말할 수는 없더라도 사실상 어느 정도는 정비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법적환경이 정비된 중국에서 물권법상의 분쟁 예컨대, 토지소유권·사용권의 침해등과 관련하여 생긴 분쟁해결에 관하여서도 중재법을 적용할 수 있는가가 의문이 제기된다. 중국은 법과 경제의 개방 등 유연한 구조와 관련하여 교섭을 촉진하고, 조정·중재 등의 재판외절차를 다수 채용하고 있음을 찾아 볼 수 있다. 근대적 민상사제도는 의사자치의 원칙 즉 사적자치의 원칙을 들고 있는 이상, 거래사회에 있어서의 중재는 분쟁의 자주적 해결과의 사이에 친화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아울러 중국은 경제발전의 목적달성이라는 명제아래에서, 민상사제도에 있어서 또 하나의 중요한 과제는 과연 어떠한 방법으로 효과적으로 낮은 코스트의 계약집행을 할 수 있는 가이다. 사회의 복잡하게 됨에 따라, 제3자에 의한 강제집행은 점차로 필요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국가 또는 중립적인 제3자로서 기능함에 충분하게 되어 있지 않은 것이 중국의 현상이다. 이제까지 중국의 분쟁해결 원리는 인간관계의 상호성에 의한 자기집행을 법의 실현의 기초로 하고, 그리고 자력성을 국가적 제도속으로 편입시켰던 것이다. 당사자의 화해나 민간적 조정 등의 재판외 분쟁처리절차가 장려되고, 법원에 의한 조정의 비례도 상당히 높다. 법의 실효성은 당사자의 납득에 의거하도록 하고, 판결의 집행은 공동체적 자기조직화의 메커니즘에 의하여 실현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국가의 법은 사회를 지배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인간관계의 상호성에 용해되어 존재하고 있다. 그 결과 중국에 있어서의 분쟁처리를 말할 때에는 ‘화해우위의 법률, 법률우위의 화해’ 혹은 ‘조정은 즉 재판, 재판은 즉 화해’라는 말이 의미하고 있듯이, 민간조정과 국가재판, *informal*한 화해계약과 *formal*한 강제판결과 같은 2분법식은 성립하지 않는다.⁷⁷⁾

전술한 바와 같이 중국은 1994년 8월 31일 중재법을 채택하여 1995년 9월 1일 공포하였다. 또 1996년 9월1일까지 각 도시의 중재기구가 모두 구성되어 중재판정부와 법원간에 경

77) 李衡東, 前掲論文, p.652.

제분쟁 처리의 경합관계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주목을 받고 있다. 중재는 절차보장이 충분하지 않고, 중재인의 선택범위도 협소하고, 필석중재판정을 할 수 있고, 1심에서 종결하고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한 것에 뿌리 깊은 염려도 있다. 중재는 조정절차에 중점을 두고, 조정은 중재적 성격을 가진 것은 중국적 중재와 조정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중국적 분쟁해결에 있어서의 호조의 이념이 발현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것은 계약적 질서와 법적질서의 연관성이라는 근본적인 제도원리에 의해서 규정된 것이다.⁷⁸⁾

V. 結 論

이상에서 중국의 물권법과 중재제도에 관하여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물권법상의 분쟁에 관하여 중재에 의하여 해결할 수 있는 가의 중재가능성의 문제에 관하여 서설적인 검토를 하였다. 사실 중국은 중화인민공화국으로 성립한 이후 ‘사회주의적 시장경제’의 체제를 완성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많은 정치적, 경제적, 이데올로기적 변화를 가져왔고, 이에 따라 법체계면에 있어서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특히 법체계면에서는 법질서의 정합성이나 안정성을 기하는데 있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고에서는 비록 서설적인 검토에 그치고 있다고는 하지만 물권법상의 분쟁에 관하여 중재제도에 의한 해결가능성을 검토하여 본 것이다. 이 문제는 중재법 제3조와 제58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아울러 타 법과의 관계에서 연구·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물권법상의 분쟁의 경우에도 분쟁의 종류에 따라 적용가능성에 차이가 있다고 본다. 이러한 연구는 중국에 진출한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중국의 물권법상의 문제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어떠한 방법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가에 관하여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앞으로 구체적인 문제와 관련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參 考 文 獻

1. 國內文獻

金相容, “中國에 있어서의 民法典 制定作業의 經過와 民法典 草案內容의 檢討”, 「아시아법제 연구」, 제3호, 한국법제연구원, 2005.

金容吉·朴冬梅, “中國의 物權法 制定動向에 관한 考察”, 「成均館法學 第18卷 第3號, 成均館

78) 李衡東, 前掲論文, p.656.

- 大學校 比較法研究所, 2006.
- 江平, “중국의 중재제도”, 「중재연구」, 제13권 1호, 한국중재학회, 2003.
- 김석철, “칭따오 진출 한국기업을 위한 중재절차 통일화에 관한 연구”, 「중재연구」, 제15권 제2호, 한국중재학회, 2005.
- 段匡, “中國物權法立法中存在的若干問題”, 「情報와 法研究」, 제7호, 國民大學校 情報와 法研究所, 2005.
- 박영길, “국제상사중재에 있어서의 분리원칙과 중재인의 자기관할권판정의 원칙”, 「중재연구」, 제13권 제2호, 2004.
- 소재선, 「중국통일계약법(합동법)개론」, 경희대학교 출판국, 2005.
- 신군재·김경배, “중국기업과의 효율적인 분쟁해결방안에 관한 연구”, 「중재연구」, 제13권 제2호, 2004.
- 成百營, “中華人民共和國仲裁法の 內容과 問題點 考察”, 한중법학회 제18회 정례 학술발표 논문, 1998.
- 王洪松, “中國仲裁制度”, 「중재연구」, 제13권 제2호, 한국중재학회, 2003.
- 梁慧星, “中國에 있어서 民法典制定의 몇가지 問題點”, 「법제연구」, 제24호, 한국법제연구원, 2003.
- 梁慧星, “中國의 民法典 編纂”, 「법제연구」, 제22호, 한국법제연구원, 2002 .
- 우광영,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의 중재규칙에 관한 연구”, 「중재연구」, 제16권 제1호, 한국중재학회, 2006.
- 尹晉基, “중국 중재법”, 「기업법연구」, 제12집, 한국기업법학회, 2003.
- 李萬熙, “새로이 제정된 中國의 仲裁法에 관한 연구”, 「법조」, 482호, 1996.
- 이주원, “중국 중재제도의 특징에 관한 소고”, 「중재연구」, 제15권 제3호, 한국중재학회, 2005.
- 이홍욱, “中國民事法의 中國 特色과 世界化”, 「比較私法」, 제10권3호(통권22호), 韓國比較私法學會, 2003.
- 張國華, “중국전통시대 민법상의 논쟁점”, 「法學論巧」, 第14輯, 慶北大學校 法學研究所, 1998.
- 최석범, “중국 국제상사중재제도의 운용실태와 개선방안”, 「중재연구」, 제14권 제2호, 한국중재학회, 2004.

2. 海外文獻

- 孔祥俊, 「擔保法及其司法解釋的理解與適用」, 法律出版社, 2001.
- 渠濤, “不動產物權變動制度研究与中國的選擇”, 「法學研究」, 第21卷第5期 總第124期, 法學研

- 究雜誌社, 1999.
- 孟勤國, 「物權二元結構論-中國物權制度的理論重構」, 人民法院出版社, 2002.
- 石川明·三上威彦, 「比較裁判外紛爭解決制度」, 慶應義塾大學出版會, 1997.
- 小島武司, 「仲裁法」, 青林書院, 2000.
- 孫憲忠, 「論物權法」, 法律出版社, 2001.
- 尹田, 「論國家財產的物權法地位」, 「法學雜誌」, 第2006季 第3期 總第158期, 法學雜誌社, 2006.
- 王勝明 主編, 「中華人民共和國物權法解讀」, 中國法制出版社, 2007.
- 梁彗星, 「中國民法典草案建理由(物權編)」, 法律出版社, 2005
- 王利明, 「中國民法典學者建議稿及立法理由(物權編)」, 法律出版社, 2005.
- 李衡東, 相互性による法とその執行, 「神戸法學雜誌」, 第46卷 4号, 神戸法學會, 1997.
- 全國人大常委會法制工作委員會民法室編, 「中華人民共和國物權法條文說明-立法理由及相關規定」, 北京大學出版社, 2007.
- 周林彬, 「物權法新論」, 北京大學出版社, 2002.
- 中國法制出版社, 「中華人民共和國物權法」, 2007.
- 崔建遠, 「物權效力一般理論」, 「法學雜誌」, 第2003年 第4期 總第139期, 法學雜誌社, 2003.
- 黃松有主編, 「中華人民共和國物權法-條文理解与适用」, 人民法院出版社, 2007.
- 胡光輝, 「國際商事仲裁管理をめぐる實效性の確保-中國國際商事仲裁における證據と暫定的保全措置を中心に-」, 「早稻田大學法學會誌」, 제55권, 早稻田大學法學會, 2005.
- 侯水平·黃果天, 「物權法爭点詳析」, 法律出版社, 2007.
- Jason Pien, "Creditor Rights and Enforcement of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l Awards in China", 45 Colum. J. Transnat'l L. 586, (2007).
- Randall Peerenboom, "The Evolving Regulatory Framework for Enforcement of Arbitral Awards i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1 Asian-Pac, L. & Pol'y J. 12 (2000).
- Eu Jin Chua, "The laws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7 Chi. J. Int'l.L 133 (2006).
- Xiaowen Qiu, "Enforcing Arbitral Awards Involving Foreign Parties : A Comparison of the United States and China", 11 Am, Rev. Int'l Arb. 607 (2000).
- William Heye, "Forum Selection for International Dispute Resolution in China - Chinese Courts vs. CIETAC", 27 Hastings Int'l & Comp. L. Rev. 535 (2004).
- William P. Alford, "The Inscrutable Occidental? Implications of Roberto Unger's Uses and Abuses of the Chinese Past", Texas Law Revuew Vol.64(1986)

ABSTRACT

A Study on the Jus Rerem Law and Arbitration Law of China

Yong-Kil Kim

The law of Jus Rerem of China enacted on March 16, 2007 came into force from October 1st, 2007. China has enacted the law of Jus Rerem. This means that all three nations of Northeast Asia have formally and substantially similar legal terms and conceptions. Therefore, they will be reciprocally influenced on the legal matters related Jus Rerem. In the year 1949 when China, as a communist country, was originally established without the private ownership system, the law of Jus Rerem was not introduced. Since the reform and the open-economy policy in the year 1978 came into force, it has become important that newly acknowledged private property has been stipulated by the law of Jus Rerem. Arbitration Law of China is enacted on August 31th, 1994 and came into force from September 1st, 1995. It is a basic law which rules Chinese arbitration system. China has enacted the law of Jus Rerem, "conformed with the 21st century", by solving a lot of issues in dispute. A socialistic idea, a traditional Chinese idea and realistic conditions of the market economy were integrated into the law of Jus Rerem. It would have a very good effect on the growth and prosperity of China.

Key word : Arbitration, Arbitration Law, The law of Jus Rerem, Private Property,
Limited rights of things